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발급		경력증명서				부분발급 및 영문				부수	
		[] 일반 [] 건설사업관리업무				[] 부분발급 [] 영문					
		보유증명서								부수	
		[] 일반 [] 시설공사적격심사 [] 건설사업관리업무									
		제출처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찰내용		공사명									
		발주청						공고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 건설기술인 중 퇴직 또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인

〇〇〇〇〇〇 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뒤 쪽)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31							41						
32							42						
33							43						
34							44						
35							45						
36							46						
37							47						
38							48						
39							49						
40							50						

참 조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용접 승강기 일반기계	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 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광업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통	전기·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조경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건설정보처리

첨부서류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사본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4. 발급대상이 10인 이상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분야가 기록된 이동식저장매체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업무분야는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를 선택(√ 또는 o)하고 미선택시 모든 업무분야로 발급됩니다.
6. 직무분야 미기재 시 최상위의 직무분야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7.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건설기술인만 가능합니다.
8.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직무 및 전문분야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분발급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시점 기준 최근 10년간 경력사항만 발급됩니다.
11. 영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경우 제16조제6항에 따라 영문으로 번역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발급됩니다.